

# 『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관광종합계획 수립과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,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여행리포터즈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(안 제4조)
- 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- 시티투어 운영(안 제11조, 제12조)
- 온라인 관광 마케팅 및 여행리포터즈 운영(안 제13조, 제14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관광기본법」 제3조,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관광기본법」, 「관광진흥법」에 근거하여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시티투어, 온라인 관광마케팅(SNS 등), 여행 리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.

### ○ 검토 결과,

-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과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,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광자원 발굴,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